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85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3. 김현정의원 대표발의(9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1. 28.)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김현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의 소독 의무 규정에서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에 대한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 이전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21조제1항)
-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및 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방역 소독약품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21조제2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조례안 예고 : 2023. 11. 06. ~ 11. 10.(5일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21조(소독 의무)를 의무만으로 남겨 두지 않고, 의무 비대상 지역의 공동주택 등에 소독 약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본 조례는 일부개정 사항 관련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근거로 “소독 의무” 만을 규정하였으나, 발의 의원이 판단하건대, 의무 이외의 지역은 법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규모면에서 영세하여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구매하여 소독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비의무 지역인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등에게 소독약품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 이를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임.

- 제2항에서는 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등 5가지 유형의 감염병을 예시하며, 소독의 방법은 일반적인 약물소독이나 질병매개곤충을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방법 등으로 방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법 제51조제3항의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객실수 20실 이상 관광 숙박업소,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백화점 및 전통시장 등 유통매장 등 12개 유형 이외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소독 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안 제21조제2항에서 법으로 소독 의무가 부여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운영하는 자에게는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이전”을 지원해 주고, 안 제3항에서는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거주자 등에게는 직접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음.
- 본 조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법으로 무조건 소독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예산으로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나 대신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은 이전해 주겠다는 것이며,
 - 300세대 이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은 법적 의무가 없어 방역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방역소독 약품을 제공해서 모기 등 해충이 전염병을 다른 주거지로 옮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임.
 - 보건소 질병관리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략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으로 방역소독약품, 모기트랩 교체용 가스, 새마을방역단 약품지원 등의 목적으로 약 4억43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모기 등 해충구제 방법은 300세대 미만 거주지역일 경우 정화조 청소 후 모기 유충 구제제를 정화조에 투입하고, 모기 유충 구제제 사용 희망 세대에게 배부하여 개별 주민들이 정화조나 변기에 투입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등은 방역기동반 유충퇴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독 의무대상 시설로 법적 기준 준수를 독려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는 모기 해충 소독 비의무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약품 지급을 통한 모기 등으로 전염되는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그 주요 목적이 있어 강남구민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조례안이라고 할 것임.
 - 또한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 발생 및 빈대 등 해충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36조제2항 별표5에서 “소독의 기준”을 콜레라, 장티

푸스,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5가지 유형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병해충 방역 소독이 탄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